

(자료)

소방법시행령개정
 공업배치법 시행령
 건설업법중 개정법률
 특정건축물정리 특조법
 주택공급 규칙중 개정령
 태양열집열기설치 및 시공기준

소방법 시행령 개정(完·81.11.6)

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오스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휘발유·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주입관으로 주입할 경우에는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에 밀착하여야 한다.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동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전기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제43조 (운반용기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철판·알루미늄판·합석·유리·도기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적재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은 제43조의 운반용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덩어리로 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장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도중 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6.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광의 직사, 누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덮개를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운반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환적·휴식·고장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중 그 위험물에 적용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송의 기준)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또는 이동저장탱크에서 뺄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취급주임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를 휴식·고장등으로 일시 정지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알루미늄알킬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송의 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할소방관서에 송부하고, 그 서면의 사본을 휴대하게 한 후,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재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절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자위소방조직

제47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한다.

1. 보일러·버너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은 일반취급소
4. 압유장치·윤활유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8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및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소중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 제조소등으로 한다.

1.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 등
2. 지정수량의 30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은 곳

제49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 ①법 제2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표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작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된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조작인원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 대	5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미만인 사업소	2 대	10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인 사업소	3 대	15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 대	20인

②제 1 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 1 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부등 개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국고보조

제50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기계·기구
 - 가. 소방펌프자동차·화학소방자동차·고가사다리차·공중방수차
 - 나. 소방용 헬리콥터·소방정
2. 설비
 - 가. 소방전용통신장치
 - 나.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 1 항의 소방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2 항의 기준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51조 (보조의 신청)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용기계·기구,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52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①내무부장관은 시·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용기계·기구,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보조의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 (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용기계·기구,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9 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54조 (주된 사무소와 지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5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6조 (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57조 (회원의 자격) 법 제70조의 4 제 1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에 한한다)·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난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업의 등

록을 한 자

3. 법 제3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신고를 한 자

제58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9조 (임원) ①협회에 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과 감사 2인을 두되, 회장·이사(회장을 제외한 이사를 말한다) 2인 및 감사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60조 (이사회)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61조 (건의 및 자문) ①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업무에 관하여 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 (감독등) ①내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감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63조 (권한의 위임)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에게, 법 제15조제 1항·법 제30조제 1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6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5조 및 제26조중 화학반응식 포소화기에 관한 사항과 비상경보기용 축전지 설비에 관한 사항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및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 9 항제17호·제19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

◇ 消防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許可등에 대한 消防官署의 同意對象에서 住宅 및 3層이하의 共同住宅을 제외하는등 同意對象범위를 縮小하고, 小規模 消防對象物에 대한 消防施設 設置義務를 緩和하여 國民의 消防施設 設置에 따르는 費用負擔을 最小限으로 줄이며, 農漁村地域 危險物販賣取扱所의 危險物取扱量의 上限基準을 大幅 緩和하여 國民生活에 便宜를 도모하고 기타 消防法의 改正(1981. 4. 4法律 第3,413號)에 따른 施行令上의 關聯條文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建築許可등에 대한 消防官署의 同意에 있어서 住宅 및 3層이하의 共同住宅을 그 對象에서 제외시키는 등 同意對象 범위를 縮小함. (令 第4條)

나. 法의 改正內容에 맞추어 防災處理對象 特殊場所에서 工場·圖書館·市場·百貨店·學校 및 共同住宅등을 제외함. (令 第11條)

다. 火災危險度가 낮은 小規模 消防對象物에 대한 消防施設 設置義務를 緩和함. (令 第17條 내지 第22條)

라. 泡消火器의 消火藥劑充填, 消防設備의 表示燈·誘導燈의 光源交替 등 輕微한 工事は 消防設備技士가 아니라도 施工할 수 있도록함. (令 第27條)

마. 注油取扱所에서 自動車등의 燃料탱크에 직접 注油하는 외에 實消費者에게도 危險物을 販賣할 수 있도록 함. (令 第34條 第1號)

바. 第2種販賣取扱所에서 取扱할 수 있는 危險物數量을 종전에는 指定數量의 5倍이상 15倍 미만이던 것을 指定數量의 5倍이상 20倍(單位農業協同組合이 經營하는 경우와 面單位이하地域의 경우에는 35倍)미만으로 擴大함. (令 第34條第2號 本款)

사. 消防用機械·器具등 製造業許可에 관한 內務部長官의 權限을 道知事에게, 危險物製造所등 許可등에 관한 道知事의 權限을 消防署長에게 각각 委任함. (令 第63條)

아. 消防法의 改正으로 內務部令으로 정하도록 된 消防施設의 設置·維持基準 및 危險物製造所등의 施設基準에 關한 條項을 削除함. (법제처 제공)

공업배치법시행령중개정령 (81. 12. 12)

공업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이전축진지역)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축진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의정부시
3.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4.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미금읍·와부읍·진접면·진건면·별내면
5.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일산읍·벽제읍·원당읍·지도면

제 3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비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산업기초개발촉진법 제 24 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도시계획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은 제외한다.

제 3 조제 1 호중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하고, 동조 제 2 호·제 8 호 및 제 11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1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천직할시
8.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소래읍·군포읍·과천면·수암면·군자면
11.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동부읍·초월면·퇴촌면·남종면·서부면·중부면
13. 경기도 광명시

제 7 조제 2 항제 16 호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을 “산림법”으로 한다.

제 15 조제 1 호중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인천시”를 “인천직할시”로, “대구시”를 “대구직할시”로 한다.

제 18 조제 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공장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당해공장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장의 증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증대를 위한 공장의 증설

제 2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0 조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법 제 13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제 19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

제 21 조제 1 항중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을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의 공장으로서”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 13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축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2.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3.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의 제한정비지역안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4.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5.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이전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이전

제32조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부 산업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장관·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농수산부장관·상공부장관·건설부장관·환경청장·서울특별시장이 소속공무원인 국장중에서 지명한 자 각 1인(경제기획원은 2인)
2. 공업입지 및 공업배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 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한국표준
산업분류
번호

업 종 명

- 31113 고기가공 및 저장업
- 31121 버터 및 치즈 제조업
- 31122 연유 및 분유 제조업
- 31123 아이스크림 제조업
- 31124 우유처리업
- 31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낙농품 제조업
- 31142 해산물 가공 저장업(냉동 및 냉장업에 한한다)
- 31161 도정업
- 31171 식빵 및 기타 빵 제조업
- 31172 과자 제조업
- 31173 국수 제조업
- 3117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빵제품 및 국수 제조업
- 31190 설탕과자 제조업
- 31211 얼음 제조업
- 31212 장류 제조업
- 3121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31216 당류 제조업

- 31217 커피 및 차 가공업
- 31321 약주 및 탁주 제조업
- 31340 청량음료 제조업
- 32117 연사 제조업
- 32122 가정용 섬유제품 제조업
- 32123 캔버스 제품 제조업
- 32124 자수업
- 32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32131 편직 양말 제조업
- 32132 편직 내의 제조업
- 32133 편직 외의 제조업
- 32134 편직 장갑 제조업
- 32135 편직물 제조업
- 321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편직업
- 32151 끈 및 로프 제조업
- 321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끈 및 로프산업
- 32191 제면업
- 32201 남자용 양복 제조업
- 32202 남자용 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 제조업
- 32203 여자 외의 제조업
- 32204 소아용 외의 제조업
- 32205 여자용 및 소아용 내의 제조업
- 32206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
- 32207 모자 제조업
- 32208 장갑 제조업
- 32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복 제조업
- 32332 가방 제조업
- 32333 핸드백 제조업
- 32334 가죽케이스 제조업
- 32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
- 32401 가죽신 제조업
- 33111 제재업
- 33112 목재건구 제조업
- 33114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 33122 목재포장용기 제조업
- 33123 목함 제조업
- 33124 등세공품 제조업
- 33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 33192 목재 가정용품 제조업
- 33193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 33201 가구제조업(내장가구 제외)
- 33202 내장 가구 제조업
- 33203 가정장치물용 캐비닛 제조업
- 33204 상업장치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3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신문용지 제외)	38511	측량기계기구 제조업
34115	건축용지 제조업	3851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41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38513	검사 및 시험용기구 제조업
34122	종이포대 제조업	38514	이·화학 및 과학용기구 제조업
34123	판지상자 제조업	38515	의료용 기구 제조업
34124	위생용 식품용기 제조업	38516	전기공급 계기 제조업
34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	38517	가스 또는 액체공급 계기 제조업
341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용기제외)	385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4193	가공지 제조업	38521	안경렌즈 제조업
34194	문구용지 제조업	38522	안경제조업
34211	신문발행업	38523	사진기 제조업
34212	정기간행물 출판업	38524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4213	서적 출판업	38525	사진 복사 장치 제조업
34214	노트, 장부 및 유사제품 제조업	38526	사진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34215	상업인쇄업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4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 및 출판업	38531	시계 제조업(케이스 제외)
34221	제본업	38532	시계 케이스 제조업
34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관련산업	39010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401	연탄제조업	39021	현전반악기 제조업
36205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39022	건반관악기 제조업
36991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39023	현악기 제조업
36992	레미콘 제조업	39024	관악기 제조업
38115	가정용식품 가공기기 제조업	39027	국악기 제조업
38120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39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악기 제조업
38131	금속제 건구 제조업	39031	체조 및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8132	건축용 및 장식용 금속제품 제조업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제조업
38133	철관금속제품 제조업	39033	납시장비 제조업
38136	금속 탱크 및 용기 제조업	390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8251	계산기 제조업	39091	철기 제조업
38252	등사 및 복사기 제조업	390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8255	타자기 제조업	390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8292	송풍기 제조업	39094	가발 제조업
38295	재봉기 제조업	39095	비 및 솔 제조업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 제조업	39096	라이터 제조업
38321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음향장치 제조업	39097	장난감 제조업
38322	유선통신 장치 제조업	39098	단추 제조업
38323	무선통신장치 제조업	390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8325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8326	방사선 장치 및 전기의료장치 제조업		
383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제조업		
38331	전기 냉장고 제조업		
38332	선풍기 제조업		
38334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업		
38335	전기이·미용 기구 제조업		
383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38392	전구 제조업		

[별표 3]

업 종 이 전 허 용 지 역

1. 도정업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3.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 4.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동
- 5. 약주 및 탁주 제조업 동
- 6. 레미콘 제조업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

◇ 工業配置法施行令 改正理由

移轉促進地域안에서의 工場의 増設 및 移轉과 制限整備地域 안에서의 工場의 新設・増設 및 移轉에 대한 制限을 一部 緩和하고 移轉促進地域안에 있는 工場으로서 商工部長官의 移轉命令의 對象이 되는 工場의 範圍를 縮小함으로써 都市型 企業의 活性化를 도모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都市計画法에 의한 開發制限区域에서의 工場의 新設・増設 및 移轉등에 대한 制限은 都市計画法에 맡기고, 工業配置法에서는 그에 대한 制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都市計画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을 工業配置法에 의한 移轉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에서 제외시킴. (令 第2條 및 第3條)
- 나. 移轉促進地域안에서의 工場의 増設 및 移轉이 가능한 業種을 擴大하고, 同地域에서의 商工部長官의 移轉命令의 對象이 되는 工場의 범위를 縮小함. (令 第19條, 第21條 및 第23條)
- 다. 종래에는 移轉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안에서 製造業을 營하는 者가 既存 工場 내에서 業種을 變更하는 것도 工場의 新設로 보아 이를 制限하였으나, 앞으로는 既存工場내에서의 業種의 變更는 許容하도록 함. (令 第18條)
- 라. 移轉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안에 있는 工場으로서 搗精業, 豆腐, 藥酒 및 濁酒, 印刷 및 出版, 시멘트 및 콘크리트製品의 工場인 경우에는 業種別 立地特性에 따라 工業地域이 아닌 地域으로 移轉하는 것을 許容함. (令 第21條) (법제처 제공)

建設業法中改正法律 (81. 12. 31일)

建設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本文중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建設業者”로 하고, 同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住居用建築物로서 延面積이 661平方미터를 超過하거나 기타의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495平方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의 新築, 増築, 改築, 再築 또는 大修繕에 관한 工事.

第4條의 2 題目 (“權限委任”)을 (“權限의 委任・委託”)으로 하고, 同條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② 建設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중 다음 각 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建設協會 또는 기타 建設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限度額의 算定
 -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實態調査簿의 作成 保管.
 - 3. 第1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補修教育
 - 4.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의 經營實態등의 調査.

第4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條의 3 (手数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 또는 建設技術者의 免許 또는 免許更新, 免許證 또는 免許手帖의 再交付나 建設技術者保有證明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数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5條의 2중 “單種工事業”을 “專門工事業”으로 한다.
第7條의 2중 “單種工事業免許”를 “專門工事業免許”로 하고 “單種免許”를 “專門免許”로 한다.

第7條의 3중 “單種免許”를 “專門免許”로 한다.

第9條의 2중 “單種工事”를 “專門工事”로 하고 “單種工事業者”를 “專門工事業者”로 한다.

第11條를 削除한다.

第12條중 “建設工事의 現場에”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工事現場에”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現場에 配置된 建設技術者는 당해 建設工事發注者의 承諾을 얻지 아니하고는 正當한 事由없이 그 工事現場을 離脱하지 못한다.

③ 建設工事發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現場에 配置된 建設技術者가 身體의 虛弱 등으로 인하여 業務遂行能力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受給人에게 建設技術者의 交替를 要請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受給人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3條 第1項중 “第7條第1項第1號 내지 第8號”를 “第7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5號, 第6號 및 第8號”로 “單種免許”를 “專門免許”로 “釜山市”를 “直轄市”로 하고, 同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14條 第2項중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및 道知事”를 “道知事”로 한다.

第16條 第1項중 “第37條”를 “第37條第2項”으로 “建設業의 免許取消 또는 營業이나 施工의 停止処分을 받은”을 “營業停止 또는 建設業의 免許取消을 받은”으로 한다.

第17條 第2項을 第5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내지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技術者의 免許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技術者免許手帖을 交付한다.

③ 建設技術者는 免許手帖을 他人에게 貸與하거나 이를 不當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建設部長官은 建設技術者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技術者免許手帖을 檢閱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更新할 수 있다.

第18條 第1項第3號중 “第3號 또는 第4號”를 “第3號 내지 第8號”로 한다.

第19條중 “2 이상의 事業체에 雇傭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다른 事業體(自營事業體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第21條를 削除한다.

第32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建設工事의 下都給契約 當事者間的 契約締結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都給契約”은 “下都給契約”으로 “都給金額”은 “下都給金額”으로 본다.

第34條第2項중 “單種工事”를 “專門工事”로 “單種工事業者”를 “專門工事業者”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下受給人은 그가 下都給 받은 建設工事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다시 下都給할 수 없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下受給人이 그가 下都給 받은 建設工事중 專門工事に 해당하는 建設工事を 해당 專門工事業者에게 다시 下都給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受給人과 下受給人間에 締結하는 契約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都給契約”을 “下都給契約”으로 본다.

第36條의 5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受給人은 発注者로부터 先金給을 받은 때에는 下都給人이資材의 購入, 勞務者의 雇傭 기타 下都給工事を着手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先金給의 內容과 率에 따라 下受給人에게 先金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人은 下受給人에게 債務의 保證을 요구할 수 있다.

第37條 第1項 第2號를 削除하고, 同條 第2項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限度額을 초과하여 都給받았거나, 同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의 都給下限線 미만의 工事を 都給받은 때

第37條 第2項 第3號중 “檢査”를 “調査 또는 檢査”로 第4號중 “下都給한 때”를 “下都給하거나 下都給 받은 때”로, 第5號중 “第36條의 5 第1項”을 “第36條의 5”로 하고, 第6號 및 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建設工事都給契約에 의한 瑕疵補修義務期間중 受給人 또는 下受給人의 歸責事由로 3회이상 瑕疵가 발생한 때. 이 경우, 下受給人의 歸責事由에 대하여는 受給人에게도 同一한 責任이 있는 것으로 본다.

9. 建設技術者 免許手帖을 貸與받거나 다른 事業體에 종사하고 있는 建設技術者를 雇傭하여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하게 한 때

第37條 第2項에 第10號 내지 第1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実績 申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하지 아니한 때

11.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12. 正當한 事由없이 建設工事都給契約 또는 下都給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13. 建設工事発注者의 業務上의 監督 또는 檢査를 忌避· 방해 또는 拒否한 때

14. 予算會計法· 地方財政法· 政府投資機關予算會計法에 의하여 契約締結에 관한 資格이 2年미만의 期間 동안 정지된 때

15. 第50條第1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거나 結果를 招來한 때

第38條 第1項 本文중 “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를 “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거나 2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하고 “(第50條 第2號의 경우에 限한다)”를 削除하며 同條同項 第8號중 “他人의 免許證 또는 免許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使用한 때”를 “不當하게 사용한 때”로 第9號중 “各號”를 “第2號로, 第11號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予算會計에 관한 法令”을 “予算會計法· 地方財政法· 政府投資機關予算會計法”으로 하고 第4號 및 第12號를 削除하며 第1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8.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으로부터 免許取消의 要求가 있을 때

第38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8條의 2 (建設技術者의 免許停止) 建設部長官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建設技術者의 免許를 정지할 수 있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建設工事現場에 配置된 建設技術者로서 그가 配置된 建設工事が 第37條 第2項 第6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1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에 正當한 事由없이 3회이상 不応한 때

第39條 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7號 내지 第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7.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免許 手帖의 檢閱 또는 更新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

8. 第38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免許停止處分에 違反하여 建設技術者의 業務를 행한 때

9. 國家技術資格法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種目の 國家技術資格이 取消된 때

第42條 但書を 削除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設業者 또는 建設技術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聽聞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建設業者 또는 建設技術者가 第13條 第1項 또는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所變動申告를 하지 아니하여 聽聞通知가 到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聽聞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処分을 할 수 있다.

第50條 本文中 “500萬원”을 “2千5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建設業者가 競争入札에 있어서 入札者間에 共謀하여 미리 造作한 價格으로 入札하거나 他人의 見積提出 또는 入札行爲를 방해한 때

第51條 本文中 “100萬원”을 “5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3號중 “都給 받은 者”를 “都給받거나 同條第6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設工事 都給下限線미만의 工事を 都給 받은 者”로 한다.

第52條 本文中 “50만원”을 “25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4號중 “檢査”를 “調査 또는 檢査”로 한다.

第53條 本文中 “30萬원”을 “150萬원”으로 한다.

第51條, 第52條, 第53條의 各 題目 “(同前)”을 “(罰則)”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許可받은 建築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 이후 設計變更으로 인하여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延面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單種工事業免許를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工事業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設部長官이 交付한 建設技術者免許手帖은 이 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된 것으로 본다.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81. 12. 31)

第1條 (目的) 이 法은 特定建築物을 選別整理함으로써 國民의財産權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特定建築物”이라 함은 無許可建築物 및 違法施工建築物을 말한다.
2. “無許可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한 建築物을 말한다.
3. “違法施工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 建築한 建築物으로서 同法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마치지 아니한 建築物을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特定建築物로서 이 法 公布

당시 事實上 完工된 建築物(增·改築된 建築物을 포함한다, 이하 “対象建築物”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再開發區域, 都市計副施設, 土地區副整理事業地區, 開發制限區域, 接道區域, 山林地域, 軍事施設保護區域, 海·空軍基地(保衛區域을 포함한다)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하는 常習災害地區 및 環境整備地區안의 建築物(開發制限區域안에서는 指定 이전에 建築된 建築物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申告)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対象建築物의 建築主 또는 所有者(이하 “所有者”라 한다)는 対象建築物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圖書 및 現場調査書를 첨부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市長 또는 郡守(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対象建築物중 無許可建築物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施策事業으로 建築 또는 改良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市長·郡守가 作成한 現場調査書로써 申告에 갈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 및 現場調査書의 내용·서식과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特定建築物整理審議委員會) ① 市長·郡守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申告에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対象建築物의 整理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定建築物整理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竣工檢査畢證의 交付·是正命令 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③ 審議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竣工檢査畢證의 交付) 市長·郡守는 審議委員會가 第7條의 規定에 적합하다고 審議議決한 対象建築物에 대하여는 建築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7條 (対象建築物의 審議基準) 第3條의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規定에 적합하여야 한다.

1. 自己 所有 垜地(使用承諾을 받은 他人所有垜地를 포함한다) 또는 國·公有地에 建築된 建築物일 것.
2. 建築法 第27條 및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違反되지 아니하고 建築物의 構造安全·衛生 및 防火와 都市計副事業의 施行상 현저한 支障이 없는 것일 것.

第8條 (是正命令등) ① 市長·郡守는 所有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6條의 規

定에 의하여 竣工檢査畢證을 交付받지 못한 対象建築物 (이하 “整理未畢建築物”이라 한다)의 所有者에게 다른 法令에 의하여 이미 행한 措置·処分등에 불구하고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第7條第2號의 規定에 적합하게 是正할 것을 命하거나 申告하게 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따라 是正된 整理未畢建築物에 대하여는 審議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한다.

③ 市長·郡守는 整理未畢建築物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申告등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電話·電氣 및 水道를 設置하거나 供給하는 者에게 그 사용 또는 供給등의 中止를 要請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供給등의 中止要請을 받은 者는 遲滯없이 필요한 措置를 取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9條 (過怠料) ① 市長·郡守는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할 때에는 過怠料를 賦課하여야 한다. 다만, 延面積 (共同住宅은 世帶當 專用面積을 말한다) 85평방미터이하인 住居用対象建築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建築物의 用途·規模·構造 및 地域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面積 (建築法の 規定에 의한 垜地안의 建築制限線을 침범한 部分의 面積을 포함한다)에 관계되는 違反部分에 대하여는 그 違反部分의 面積 (住居用無許可建築物은 85평방미터를 초과한 面積을 違反面積으로 본다)의 매평방미터당 30만원이하.

2. 第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違反事項에 대하여는 當該建築物에 適用하는 課稅標準額의 100분의 10 이하.

③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稅 徵收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④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過怠料는 無許可建築物이 있는 區域안의 道路, 上·下水道·環境整備 기타 이 법의 目的에 적합한 事業 이외의 用途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10條 (無償讓與받은 國·公有地의 使用) ① 住宅改良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再開發區域을 廢止하여 당해 區域안의 無許可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하는 境遇에는 同法の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讓與된 土地는 原所有者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還收되지 아니하며 當該土地의 使用·收益 또

는 処分으로 인한 收入은 同法の 規定에 불구하고 無許可建築物이 있는 區域안의 道路, 上·下水道 및 環境整備 기타 이 법의 目的에 적합한 事業 이외의 用途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讓與된 土地의 管理處분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1條 (權限의 委任)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기타 區가 設置된 市의 市長은 이 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2條 (罰 則)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4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3條 (施行令) 이 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며 1984年 6月30日까지 그 効力を 가진다.

②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竣工未畢既存建築物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申告되어 竣工檢査畢證을 交付받았거나 處理중에 있는 建築物은 이 법에 의하여 申告되어 竣工檢査畢證을 交付받았거나 處理중인 것으로 본다.

③ (廢止法律) 이 법 施行과 同時에 竣工未畢既存建築物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82. 1. 4)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호의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제11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불임시술자증명 [선매 청약저축 1순위해당자중 2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전에 세대주 또는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 영구불임시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임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제11조 제3항 제3호 및 제6호중 “(제15조 제3항 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를 “(제15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13조 제 1항 제 1호중 “군별번호가 동일한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에 및 영구불임시술자(2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이 “(영구불임시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제13조 제 1항 제 2호중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를 “3회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5조 제 3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3호를 삭제한다.

2. 제 2순위 :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로서 제13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제15조 제 6항중 “제 3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3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중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23조 제 1항 단서중 “슈퍼마켓, 종합상가의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를 “슈퍼마켓, 종합상가를 직영하고 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태양열집열기설치 및 시공기준 (82. 1. 4)

1. 총 칙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평판형 액체식 태양열 집열기(이하 “집열기”라 한다)의 설치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집열기

태양에너지로 직접 흡수하여 이용 가능한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열 이용기기를 말한다.

(2) 축열탱크

집열기에서 집열한 열을 필요한 때에 난방이나 급탕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용기에 저장하는 탱크를 말한다.

(3) 자동제어장치

태양열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계통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말한다.

(4) 보조열원장치

태양열 집열량이 부족할 때 열원을 보충하여 주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 태양열 시스템

집열기를 설치하여 건축물등 난방 또는 급탕을 하기 위한 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되며 각 부간의 열 이동을 강제 순환 또는 자연순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한 것으로 그 구성 예는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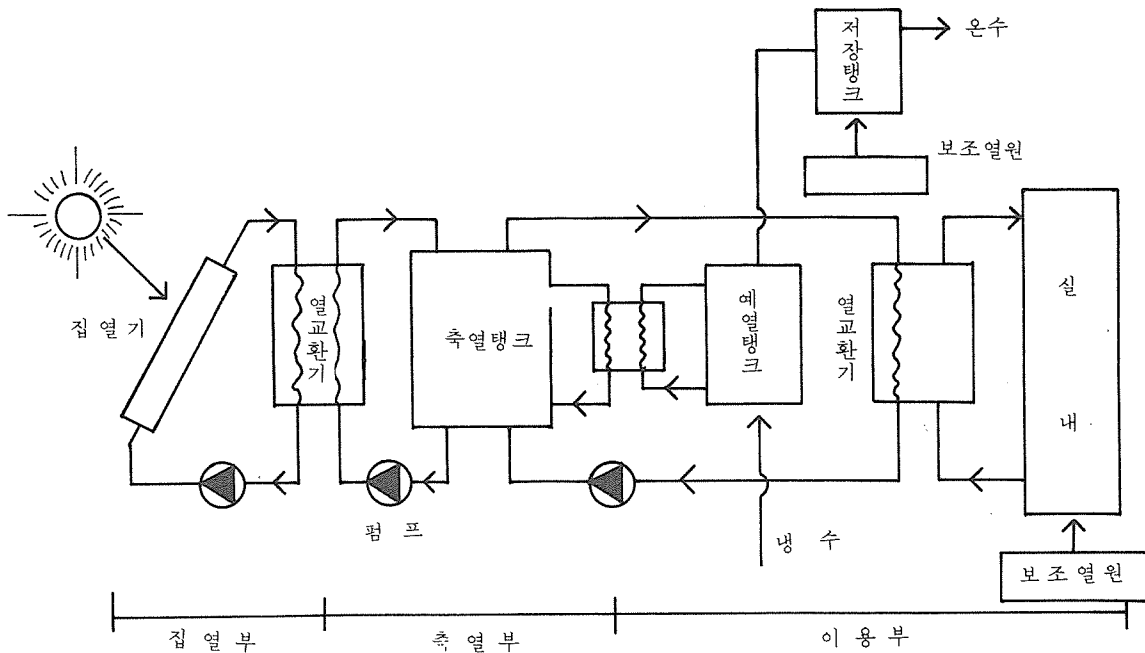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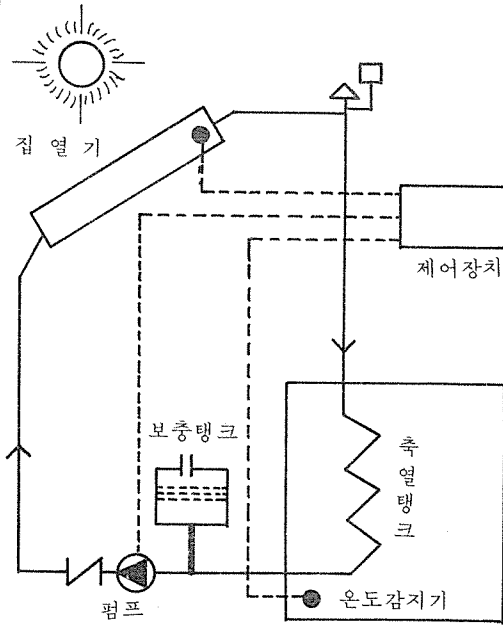


그림 1.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예

(6)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방식

태양열 시스템에 사용되는 열매의 종류, 동파방지, 시스템압의 유지 및 태양열 이용 방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품들의 연결 또는 조합 형태를 말한다.

(1) 개방식



(2) 밀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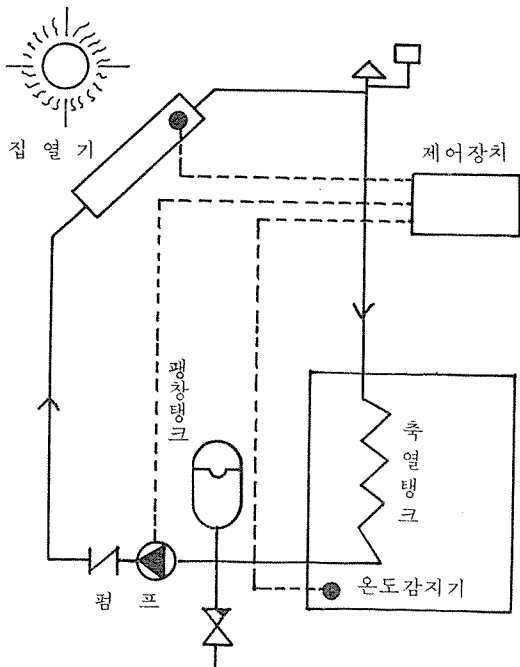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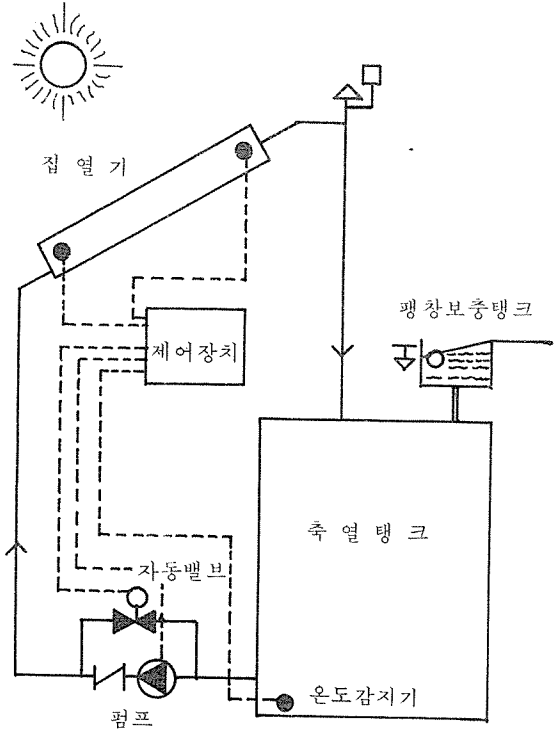


그림 2. 부동액 주입식의 예

① 부동액 주입식

태양열 집열회로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열회로의 열전달 매체로 부동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개방식



(2) 밀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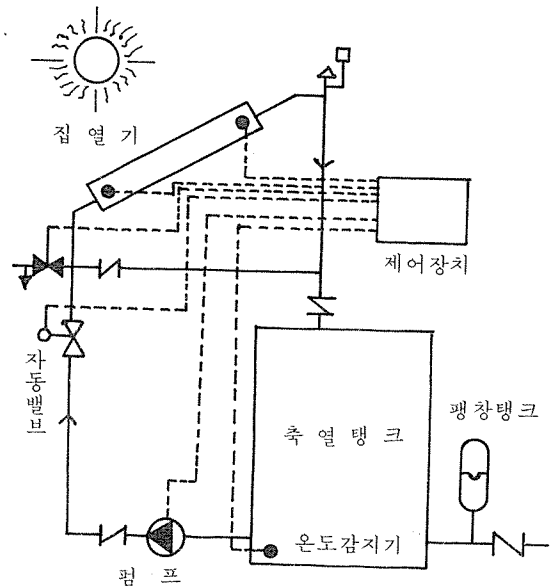


그림 3. 자동배수식의 예

② 자동배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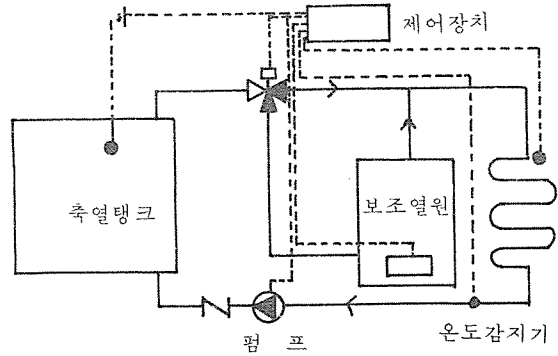
시스템이 동파될 조건에서 결빙될 열매를 자동배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직접이용 방식

태양열 집열량이 부족할 경우 축열탱크를 보조열원으로 직접 가열하여 축열탱크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이용부에 열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조열원을 통과시켜 승온되도록 하여 열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자동밸브 이용식



(2) 펌프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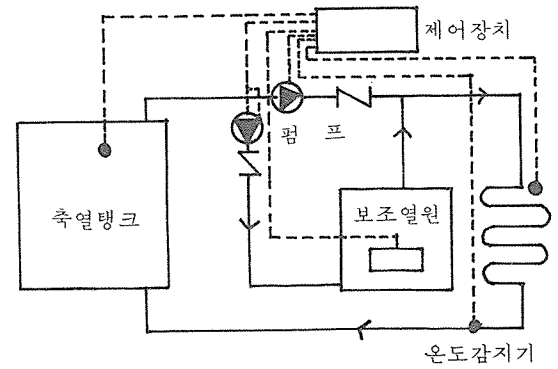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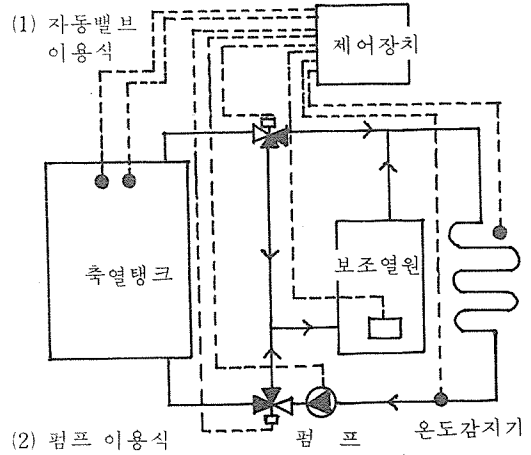


그림 6. 예열이용방식의 예

⑥ 혼합이용 방식(분리이용 방식과 예열이용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2) 펌프 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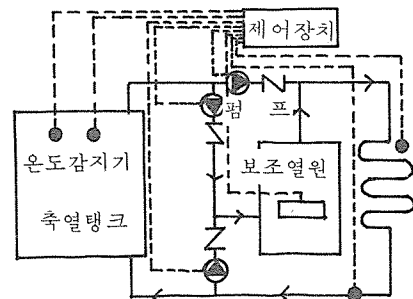


그림 7. 혼합이용방식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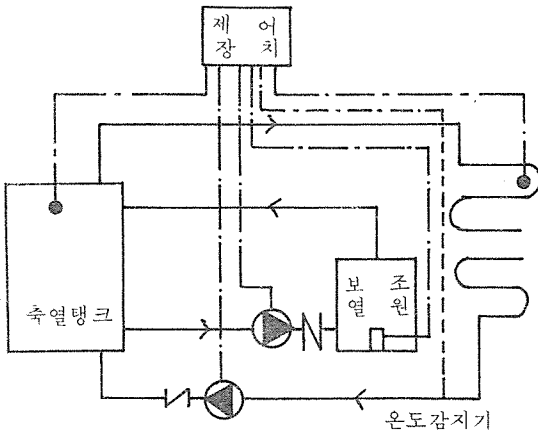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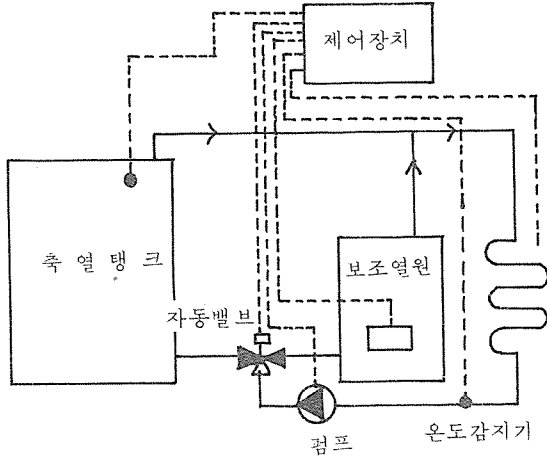


그림 4. 직접이용방식의 예

④ 분리이용 방식

태양열 집열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축열탱크의 열원만으로 공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열원으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자동밸브 이용식



(2) 펌프 이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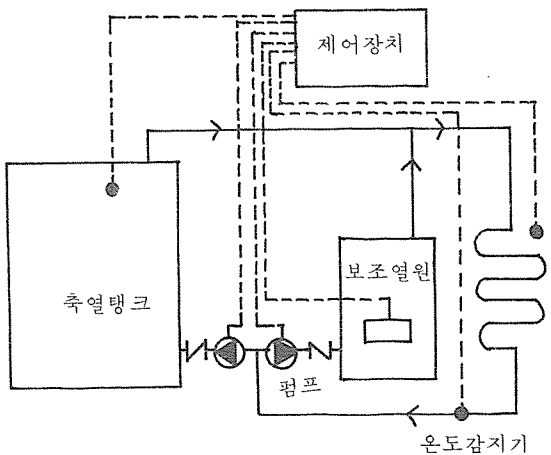


그림 5. 분리이용방식의 예

⑤ 예열이용 방식

태양열 집열량이 부족할 경우 축열탱크의 열매를

2. 재 료

집열기 및 부속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1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 1〉 집열기 및 부속기자재의 재료

기자재명	재 료 명	규 격	비 고
집 열 기	—	형식승인제품	
축열탱크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부식성재료는 내면에 방청도료 또는 세라믹을 도포하여야 한다.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압력용기용 강판	KS D 3521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29	
	냉간압연 스테인레스강판	KS D 3698	○콘크리트는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열간압연 스테인레스강판	KS D 3705	
	내열성 폴리에틸렌 염화비닐콘크리트		
열교환기	저온열 교환기용 강판	KS D 3571	○음료수용에는 내식성재료가이어야 한다.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열교환기용 이음매 없는 니켈, 크롬, 철 합금판	KS D 3757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판	KS D 5301	
	이음매 없는 복수기용 황동판	KS D 5537	
보조열원 장치		형식승인제품	열부하의 100%를 충당할 수 있는 장치로 하되, 태양열시스템의 부식 및 불필요한 연료의 소모를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것이 좋다.
파이프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수도용 아연도강관	KS D 3537	
	저온 배관용 강관	KS D 3569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판	KS D 5301	
	내열성 플라스틱관		
관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KS B 1536	
	냉동형 플래어 관이음	KS B 1537	
	배관용 강관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밸브	청동 5kg f/cm ²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03	
	황동단조 5kg f/cm ²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20	
	주철 5kg f/cm ²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50	
	주강 10kg f/cm ²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63	
보온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보온용 광석면 제품	KS F 47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1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KS M 3809	
	석면 보온재	KS F 4709	
	질석	KS F 3702	
	규조토 보온재	KS F 3502	

3. 설치 및 시공

3-1 집열기

(1) 방 향

정남향을 원칙으로 하되 정남을 기준으로 남동 20도에서 남서 30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2) 경사각

① 난방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위도+10도를 기준으로 하되 이 수치의 ±15도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급탕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위도를 기준으로 하되 이 수치의 ±15도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집열기 설치 경사각의 지역별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집열기 설치경사각의 예

(단위 : 도)

집열기의 설치 경사각

지역명	위도	난방	급탕
춘천	37.54	32.54~62.54	22.54~52.54
서울	37.34	32.34~62.34	22.34~52.34
인천	37.29	32.29~62.29	22.29~52.29
수원	37.16	32.16~62.16	22.16~52.16
청주	36.38	31.38~61.38	21.38~51.38
대전	36.18	31.18~61.18	21.18~51.18
대구	35.53	30.53~60.53	20.53~50.53
전주	35.49	30.49~60.69	20.49~50.49
광주	35.08	30.08~60.08	20.08~50.08
부산	35.06	30.06~60.06	20.06~50.06
제주	33.31	28.31~58.31	18.31~48.31

(3) 설 치

① 원칙적으로 건물의 지붕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지조건 등에 따라 타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면에 설치되는 집열기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150mm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② 집열기의 청소 및 정비수리에 편리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가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열기 최하단부와 접하는 수평면에서 정남향의 상향 30도 이상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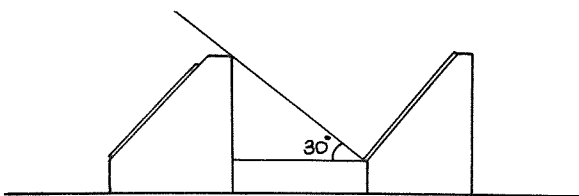


그림 8. 남향면 장애물의 예

④ 집열기를 지붕 일체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집열기와 지붕면의 접촉부위가 빗물이나 눈등에 의해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배수가 잘 되도록 공간을 두는 것이 좋다.

⑤ 지지대는 부식 및 뒤틀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지대는 풍압 또는 눈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집열기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인접 위치에 두어서는 안된다.

(4) 배 열

① 각 집열기는 통과하는 열매의 유량이 같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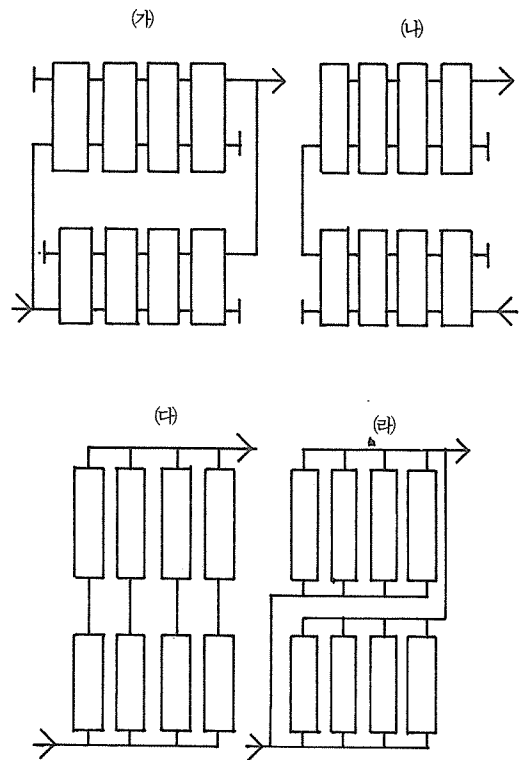


그림 9. 집열기 배열의 예

② 자동 배수식 집열회로는 동파될 조건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전회로내의 열매가 빠질 수 있도록 배관 경사를 주어야 한다.

③ 집열회로내 기공이 차지 않도록 최상단부 까지 공급 배관은 상향, 환수배관은 하향 설치한다.

3-2 축열탱크

(1) 용 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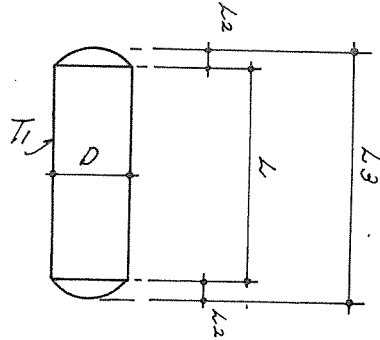
용량은 집열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m²당 40리터~100리터로 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제작

① 강판을 사용한 원통형 축열탱크의 용량별 판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강판재 원통형 축열탱크 용량에 따른 판의 두께

용량 (ℓ)	동체안지름 D (mm)	동체길이 L (mm)	경관높이 L ₂ (mm)	전장 L ₃ (mm)	판 두께 (mm)		제품중량 (kg)	전용량 (ℓ)
					동판 T ₁	경판 T ₂		
100	400	800	103	1,006	3.2	3.2	50	108
200	500	1,000	122	1,244	3.2	3.2	70	211
300	600	1,050	141	1,332	3.2	4.5	95	322



용량 (ℓ)	동체안지름 D (mm)	동체길이 L ₁ (mm)	경관높이 L ₂ (mm)	전장 L ₃ (mm)	판 두께 (mm)		제품중량 (kg)	전용량(ℓ)
					동판 T ₁	경판 T ₂		
400	650	1,200	151	1,502	3.2	4.5	115	430
500	700	1,300	161	1,622	3.2	4.5	125	540
750	800	1,500	180	1,860	4.5	4.5	215	812
1,000	900	1,550	200	1,950	4.5	4.5	250	1,068
1,500	900	2,400	200	2,800	4.5	4.5	335	1,608
1,900	1,100	2,000	239	2,478	4.5	6.0	420	2,047
2,000	1,100	2,150	239	2,628	4.5	6.0	435	2,189
3,000	1,200	2,650	259	3,168	6.0	6.0	670	3,186
4,000	1,200	3,600	259	4,118	6.0	6.0	840	4,260
5,000	1,400	3,300	298	3,896	6.0	6.0	930	5,376
6,000	1,400	4,000	298	4,596	6.0	6.0	1,080	6,454
7,000	1,500	4,000	320	4,640	6.0	9.0	1,300	7,431
8,000	1,500	4,660	320	5,300	6.0	9.0	1,450	8,597
10,000	1,600	5,230	339	5,908	6.0	9.0	1,670	10,952
12,000	1,700	5,400	359	6,118	6.0	9.0	1,850	12,780
15,000	1,800	6,000	378	6,756	8.0	9.0	2,660	15,886
18,000	2,000	5,800	417	6,634	8.0	9.0	2,930	19,066
20,000	2,000	6,500	417	7,334	8.0	9.0	3,200	21,264
25,000	2,200	6,700	456	7,612	9.0	9.0	4,050	26,588
30,000	2,500	6,200	514	7,228	9.0	9.0	4,400	32,070

(주) : 판두께 (호칭치수) 이외의 치수는 참고 치수임.

- ② 축열탱크는 자체 하중 및 압력,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견고한 구조위에 놓여져야 한다.
- ③ 축열탱크는 배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④ 부착된 장치의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본체 상부와 측면에는 30c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하며 하부는 10c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 ⑤ 설치후에 내부의 보수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 되면

구조의 축열탱크에는 맨홀을 두어야 한다.
다만, 1000리터 미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⑥ 열교환기의 내면은 열매를 주입하기 전에 세척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 ⑦ 음료수회로에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독성열매와 반드시 이종으로 격리된 구조이어야 한다.
- ⑧ 열교환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급 및 환수관에 온도계를 설치하며 온도계는 KSB 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에 준하는 온도계를 사용하고 온도 측정범위는 0℃~150℃로 눈금량은 2℃로 한다.

- ⑨ 축열탱크 상부에는 KSB 5320(공업용 바이 메탈식 온도계)에 준하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온도 측정범위는 0℃~100℃로 눈금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3) 보 온

- ① 축열탱크의 보온은 열손실율이 25.22Kcal/hr·m²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 ② 열전도율이 0.036 kcal/mhr℃의 보온재료는 설치장소 또는 설계온도차에 따라 최소한 표 4와 같은 보온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4〉 설치장소에 따른 보온두께

열전도율 : 0.036 kcal/mhr℃

설치장소	보온재두께 (mm)
옥 내	76.2
옥 외	114.3

3-3 팽창탱크

(1) 용 적

- ① 팽창탱크의 용적은 100℃ 미만의 작동온도와 4층건물 이하에 적용된 경우 각 회로내 물의 총량에 표 4의 팽창용적계수를 곱한 값보다 크게 한다.

〈표 5〉 물의 팽창용적계수

팽창탱크의 종류 및 적용 팽창용적계수

개 방 식		0.07
밀 폐 식	1층	0.10
	2층	0.13
	3층	0.17
	4층	0.23

- ② 물이 아닌 열매를 사용하거나 100℃ 이상의 작동 온도 및 4층 건물보다 높은 높이로 구성되는 태양열 시스템의 팽창조의 용적은 다음 식을 참고로 한다.

$$V = 1.5 \times \Delta v \quad (\text{개방식})$$

$$= \Delta v / \left(\frac{P_1}{P_1 + 0.1H} - \frac{P_2}{P_2} \right) \quad (\text{밀폐식})$$

$$\Delta v = \left(\frac{1}{W_2} - \frac{1}{W_1} \right) \cdot v$$

V : 팽창탱크의 용적(m³)

W₁ : 팽창전의 열매비중(kg/m³)

W₂ : 팽창후의 열매비중(kg/m³)

v : 회로내의 열내용적(m³)

P₁ : 대기압(보통 1.0kg/cm²)

H : 팽창탱크에서 시스템 상단부까지의 높이(m)

P₂ : 시스템의 허용압력(kg/cm²)

(2) 설 치

- ① 팽창탱크는 온도변화에 의한 열매의 유출 방지 및 허용압력 유지를 위하여 격리된 회로마다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개방식 팽창탱크

ㄱ. 팽창탱크의 상단부에는 배기구와 배수구를 두어야 한다.

ㄴ. 팽창탱크는 가능한한 회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팽창탱크를 낮게 두고자 한다면 축열탱크내에 공기실을 두어 밀폐식으로 겸용하는 편이 바람직 하다.

③ 밀폐식 팽창탱크

ㄱ.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지지대는 채워진 팽창탱크 무게의 2배를 견딜 수 있도록 한다.

ㄴ. 팽창탱크는 펌프가 작동 시작할 때 음압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흡입구측에 설치되는 편이 좋다.

3-4 펌 프

(1) 용 량

집열펌프의 순환유량은 집열기면적 1m²당 0.9리터/min이상으로 정상성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선 정

① 태양열 시스템에 설치되는 펌프는 원심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열매와 접하는 펌프의 모든 구성품은 내식성 재질로 된 것이라야 한다.

(3) 설 치

① 펌프는 집열회로의 공급측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펌프는 언제나 작동이 용이하도록 열매가 차 있어야 한다.

③ 모터 하우징은 절대로 보온되어서는 안된다.

④ 이 물질의 발생이 적은 회로에서는 펌프의 유량상향부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되는 편이 좋다.

⑤ 개방식 회로에서 적당한 펌프의 작동을 위한 흡입 양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3-5 배 관

(1) 태양열 시스템의 운전중에 어떠한 조건에서나 시수주관으로 오염되거나 불결한 시스템의 열매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역류 방지장치 이외의 어떠한 기자재로든지 태양열 시스템과 시수배관을 연결하여 음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 시수 배관과 하수 배관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직

접 연결해서는 안된다.

- (4) 태양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관에 있어서 비음료수관은 마시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출구에 표시되어야 한다.
- (5) 밸브조작등 배관을 구별하기 위하여 보온한 위에 배관의 종류 및 유체의 진행방향을 표시하도록 한다.
- (6) 배관중의 물과 보조열원내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하며 배출구 환수주관의 맨 끝부분 가장 낮은 곳에 KS B2331(수도꼭지) 또는 KS B2303(청동 5kg/cm²게이트 밸브)에 규정한 수도꼭지나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집열기와 배관의 접속은 관 및 흡수관의 열 신축과 내압성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접속시켜야 한다.
- (8) 자동배기 밸브는 시스템 설계에서 불필요하지 않는 한 시스템의 최상단부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9) 공기분리기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어야 한다.
- (10) 모든 배관의 열 사용처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 (11) 모든 배관은 KS F 2803(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의한 보온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2)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은 배관은 방수, 방습, 동결방지 및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자동제어장치

(1) 기능

- ① 집열기와 축열탱크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차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축열탱크내 고온의 열매를 필요시 사용회로에 송수하거나 냉각된 열매를 집열회로에 송수할 수 있도록 펌프를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③ 태양열 회로와 보조열원과의 연결을 자동제어장치에 의하여 작동 또는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 및 기체 보일러가 아닐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동파방지를 위한 자동 배수식의 경우에는 정전시에는 집열기가 동파될 조건을 감지하여 자동밸브가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⑤ 각 계통별로 정상가동을 알려주는 전원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 ⑥ 고장시 각 계통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소규모 급탕용은 기계적인 제어기능을 갖지 않아도 된다.

(2) 설치

- ① 실내온도 조절기는 실내의 평균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 ② 집열기 온도감지기 위치는 최고온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축열탱크 온도감지기 위치는 최저온도인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4. 검 사

태양열 이용 시스템의 설비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 수압시험

- (1) 수압시험은 시스템의 보온시공전에 하여야 한다.
- (2)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하되 그 수치가 2kg/cm²미만일 때는 2kg/cm²로 한다.
- (3) 수압시험을 하여 시스템의 어떤 구성품에서도 누설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 (4) 용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밸브 및 기타 기기를 떼어내거나 관을 끼워 조인 다음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에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시험수압에 도달된 후 30분 경과한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5) 수압시험 중 또는 시험후에는 물이 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 (6) 누설 및 변형이 될 경우에는 수리한 다음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 (7) 수압시험을 가급적 일사량이 적은 때 하도록 한다.

4-2 운전상태 검사

- (1) 집열회로 및 이용회로를 세척하고 난뒤에 열매를 주입하여야 한다.
- (2) 열매의 주입은 일사량이 적은 때 주입하도록 한다.
- (3) 각 회로내에 충분한 열매를 주입한 뒤에 작동을 시작하여야 하며 각 회로내에 공기를 제거한 후에 작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 (4) 정상작동이 될 경우에는 자동제어장치가 원하는 조건대로 정확히 작동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도서 및 시공확인서

태양열 설비를 시공한 자는 설치자에게 시공도서 및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양식 참조)

5-1 시공도서

(1) 시공도

- ① 시공자는 시공도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가 각각 1부씩 소지 함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의 시공 또는 정비수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공도의 축적은 1/50 또는 1/25로 하며 용지의 크기는 한국공업규격에 준한 A₀에서 A₄까지로 한다.
- ③ 제도법은 원칙적으로 KS A 0005(제도총칙)에

따른다. 시공도는 태양열 시스템 “개념설계도”와 “상세시공도”로 구분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KS B 0051(배관도시기호), KS C 0102(전기용기호) 및 KS F 1501(건축제도 통칙)에 따르며 별도의 기호나 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도면에 부기한다.

- ④ 개념설계도는 “시스템구성도”와 “제어개념도”로 구분하여 태양열 시스템의 기능, 작동 및 제어에 필요한 구성요소만을 표시한다.
- ⑤ 상세시공도는 시공자 또는 사후관리 기술자가 용이하게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 또는 설비 보수할 수 있도록 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를 구성하는 기자재의 연결, 치수, 용량등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 ⑥ 시공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ㄱ. 개념설계도

(가) 시스템의 구성도

- 집열기 설치면적
- 축열탱크 용량
- 각 회로의 열매 유량 및 방향
- 펌프의 용량
- 열교환기의 용량
- 기타 주요기기의 용량
- 동파방지 방법

(나) 제어개념도

- 제어기기의 작동기준
- ON/OFF 표시
- SWITCH 및 RELAY 수량 및 연결방식

ㄴ. 상세시공도

- 각 회로의 열매방향
- 집열기의 규격, 수량, 배열, 연결배관 및 구조물 치수
- 축열탱크의 규격, 재질, 연결배관 및 보온재와 보온두께
- 배관의 규격, 길이, 재질, 이음방식 및 보일러와 보온두께
- 팽창탱크의 규격, 재질, 연결배관
- 관이음쇠 규격 및 이음방식
- 밸브류의 규격 및 이음방식
- 제어기기의 규격 및 설치방식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2) 운전지침서

- ① 시공자는 운전지침서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함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운전할 경우에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열 시스템의 운전자가 태양열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운전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 시공자 시운전 절차방법
 - 시스템 기능, 작동 및 제어에 관한 설명
 - 운전중 정비에 관한 사항
 - 고장점검 절차
 - 안전에 관한 사항
 - 정비 및 수리·예비 품목 목록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2 시공 확인서

- (1) 시공자는 시공도서와 같이 별지 서식에 의한 시공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와 시공의뢰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함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의 사후관리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도서와 함께 시공확인서를 태양열 시스템의 준공과 동시에 시공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기 타(예외)

집열기의 설치 및 시공이 연구시험 또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용제외) 이 고시 시행당시 태양열 집열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1982년 3월31일까지 이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1]

시 공 확 인 서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시공내역	주소		지정번호		
	시공기간		난방면적	m ²	
공	집열기	시 시스템 동파방지대책		태양열이용방법	
		규격		형식승인번호	
		면적	매 m ²	제조회사명	
		방위각		경사각	
내	축열탱크	열매의종류		집열펌프용량	ℓ/min
		용적	m ²	재료	
		보온재종류		보온재두께	mm
용	보조열원	형식		형식승인번호	
		용량	Kcal/Hr	제조회사명	
시공보증기간		19 . . . 부터 19 . . . 까지			
특기사항					
첨부서류		시공도 1부 운전지침서 1부			

위와 같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